

母子保健센터 運營實態調查報告書

－管理運營中心－

張 芝 燮
金 貞 泰
金 淑 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머 리 말

政府는 都市・農村間의 母子保健 서비스의 不均衡을 緩和하고 農漁村 住民의 母子保健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既存의 母子保健事業을 活性化 시킴과 同時에 世界銀行 (IBRD) 借款을 導入하여 農漁村 地域에 總 89 個所의 母子保健센터를 建立中에 있으며 그中 71 개 母子保健센터가 1985 年까지 完工 開院 豫定입니다.

이들 센터는 開院 初期부터 專門醫療人力 및 運營財源의 確保難 또는 住民의 母子保健에 대한 認識不足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年次的으로 開院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러한 센터事業을 活性化 시키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나 運營의 年輪이 짧은 關係로 一般的으로 活動이 低調한 實情에 있습니다.

따라서 母子保健센터 事業의 活性化를 위한 政策研究에 對한 努力은 時急한 課題라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1985 年 6 月末 現在 開院中이거나 年內 開院 豫定인 71 個센터의 運營實態를 管理運營 側面에서 調査分析한 것이며 또한 附錄에는 71 個 센터別 現況을 收錄하였으므로 向後 센터 事業의 活性化를 위한 政策 講究에 必要한 基礎資料가 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끝으로 建議된 內容이 政策當局에 의해 早速 解決되어 센터事業의 活性化가 이루어 지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 바 입니다.

1985 年 12 月

韓國人口保健研究院長

朴 賢 武

目 次

I . 緒 論	5
1 . 調查背景	5
2 . 調查目的	6
II . 調查方法 및 內容	8
III . 母子保健센터 現況	9
IV . 調查結果	12
1 . 開院時期 및 建物利用實態	12
2 . 人力現況	14
3 . 管內醫療機關 및 指定移送病醫院現況	19
4 . 諸檢査	21
5 . 事業實績	22
6 . 豫 算	26
7 . 記錄 및 報告書式	28
8 . 施設 및 裝備	30
9 . 洗濯 및 食事	34
10 . 隘路 및 提言	35
V . 要約 및 建議	36
1 . 要 約	36
2 . 建 議	39
附 錄	47
1 . 母子保健센터別 現況	49
2 . 調查表	85

I . 緒 論

1. 調查背景

母子保健事業의 對象이 되는 妊産婦와 嬰幼兒는 國民健康上 가장 重視되는 人口集團일 뿐 아니라 對象人口 規模面에서도 全體人口의 約 28.8%¹⁾에 해당되어 가장 重要하고 基本的인 保健管理 要求集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貧弱한 처지에서 國家가 繁榮할 수 있는 길이 健康하고 優秀한 國民을 確保하는 일이라 볼때 母子保健事業의 重要性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하겠다. 다시 말해 健康한 어머니가 健康한 子女를 生産하여 養育하는 것은 國民健康의 基本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對象集團에 대한 適切한 保健管理는 이 時點에서 國民福祉 向上과 生産性 增大에 이바지 함은 물론 다음世代의 國民體位와 民族資質을 向上시키는 未來指向的인 事業이기도 하다. 또한 母子保健事業에 投入된 努力의 効果는 다른 어느 保健醫療事業에 投入된 努力에서 거둘 수 있는 效果보다 比較가 많될 程度로 至大함을 認識하여 母子保健事業을 活性化 하여야 한다.

그간 이룩된 社會·經濟的인 與件의 變動과 醫療施設의 擴充, 國民의 保健意識의 變化 등에 힘입어 母子保健의 水準도 크게 改善되고 있

註 1)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人口部門計劃(案), 人口部門實務計劃班, 1981. 4.

으나 아직도 都市・農村間의 母子保健水準의 隔差는 甚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한 調査結果(1982)²⁾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專門人에 의한 安全分娩率은 69.4%이며 都市・農村別로는 都市는 82.5%, 農村은 46.7%로 아직도 農村地域의 母子保健水準은 都市에 비해 크게 落後된 實情이다.

이에 政府는 都市・農村間의 母子保健水準의 隔差를 줄이기 위하여 既存의 母子保健事業 活性化는 물론 世界銀行 (IBRD) 借款을 導入하여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個年計劃으로 全國의 郡部地域에 總 89 個所의 母子保健센터를 建立할 計劃으로 推進中에 있다. 其中 1985년까지 完工開院될 71개 센터는 專門醫療人力 및 運營財源 確保難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開院되어 事業關係者는 물론 政策立案者까지도 센터運營의 活性化에 至大한 關心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의 運營實態를 把握하으로써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에 대한 適切한 對策을 講究하는 努力은 時急한 課題라 하겠다.

2. 調査目的

本 調査는 農・漁村地域住民의 母子保健水準의 向上과 健康增進을 위하여 大韓民國政府와 世界銀行 (IBRD) 間의 協約에 의한 借款事業에 의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個年間 年次的으로 建立되는 總 89개 母子保健센터中 1983年度까지 建立된 71개 母子保健센터의 運

註 2)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12.

營實態를 調査分析하여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索하여 政策에 反映함으로써 既・開院된 센터 運營의 改善과 아울러 向後 開院되는 센터의 運營을 圓滑히 하여 効率的인 母子保健事業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調査方法 및 內容

本 調査는 郵便說問調査方法을 使用하였다. 調査表는 該當 母子保健센터에서 內容을 記錄하여 郵便으로 回送하도록 協調를 要請하였으며, 調査時點은 1985年 6月 30日을 作成基準日로 하여 1985年 7月末까지 當院에 送付하도록 하였다.

集計分析은 資料 蒐集의 遲延으로 9월에 實施되었다. 調査內容은 主로 센터의 管理運營에 焦點을 두어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調査되었으나 郵便設問調査의 脆弱點이라 할 수 있는 內容 記載事項이 多少 未洽한 點이 있었다.

開院時期, 建物利用實態, 人力現況, 管內醫療機關現況, 指定移送 病醫院現況, 諸檢査, 事業實績, 豫算, 記錄 및 報告書式, 施設 및 裝備, 洗濯 및 食事を 비롯하여 運營上의 隘路 및 建議事項 등이다.

센터의 서어비스 內容은 別途의 研究(都市, 農村 母子保健 比較研究)에 의해 推進되고 있으며 資料는 手集計에 의해 分析되었다.

Ⅲ. 母子保健센터 現況

우리나라의 公共 母子保健센터의 數는 既存의 7 個센터 (釜山, 大邱光州, 大田, 蔚州, 昌寧, 固城) 와 I BRD 借款事業에 의해 建立되는 89 개 센터를 合하여 96 個所이다.

이中 I BRD 借款事業에 의해 建立되는 89 개 센터를 形態別, 建立年度別, 道別, 都市 農村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별첨표 참조)

形態別로는 A 型과 B 型으로 區分되며 A 型은 총 26 個所로 325 坪의 施設規模에 16 病床, 人口 20 萬名地域에 建立되고 B 型은 222 坪規模에 6 病床, 人口 10 萬名 地域에 建立되고 있다.

建立計劃年度別로는 1981 年 14 個所 (B 型) 1982 年 28 個所 (A 型 13 , B 型 15) 1983 年 29 個所 (A 型 7 , B 型 22) 1984 年 18 個所 (A 型 6 , B 型 12) 이다.

道別 建立數는 全南이 15 個所로 가장 많으며 江原, 慶北이 各各 14 個所, 京畿 11 個所, 忠北, 全北 各各 9 個所, 忠南 8 個所, 慶南 7 個所, 濟州 2 個所이다.

當初 母子保健센터는 農·漁村地域에 建立할 計劃이었으나 住民의 利用率과 既存 公共施設과의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6 個 市地域 (錦城, 大田, 木浦, 原州, 太白, 天安) 에도 建立하게 되어 83 個所가 農村 (郡部) 地域에 建立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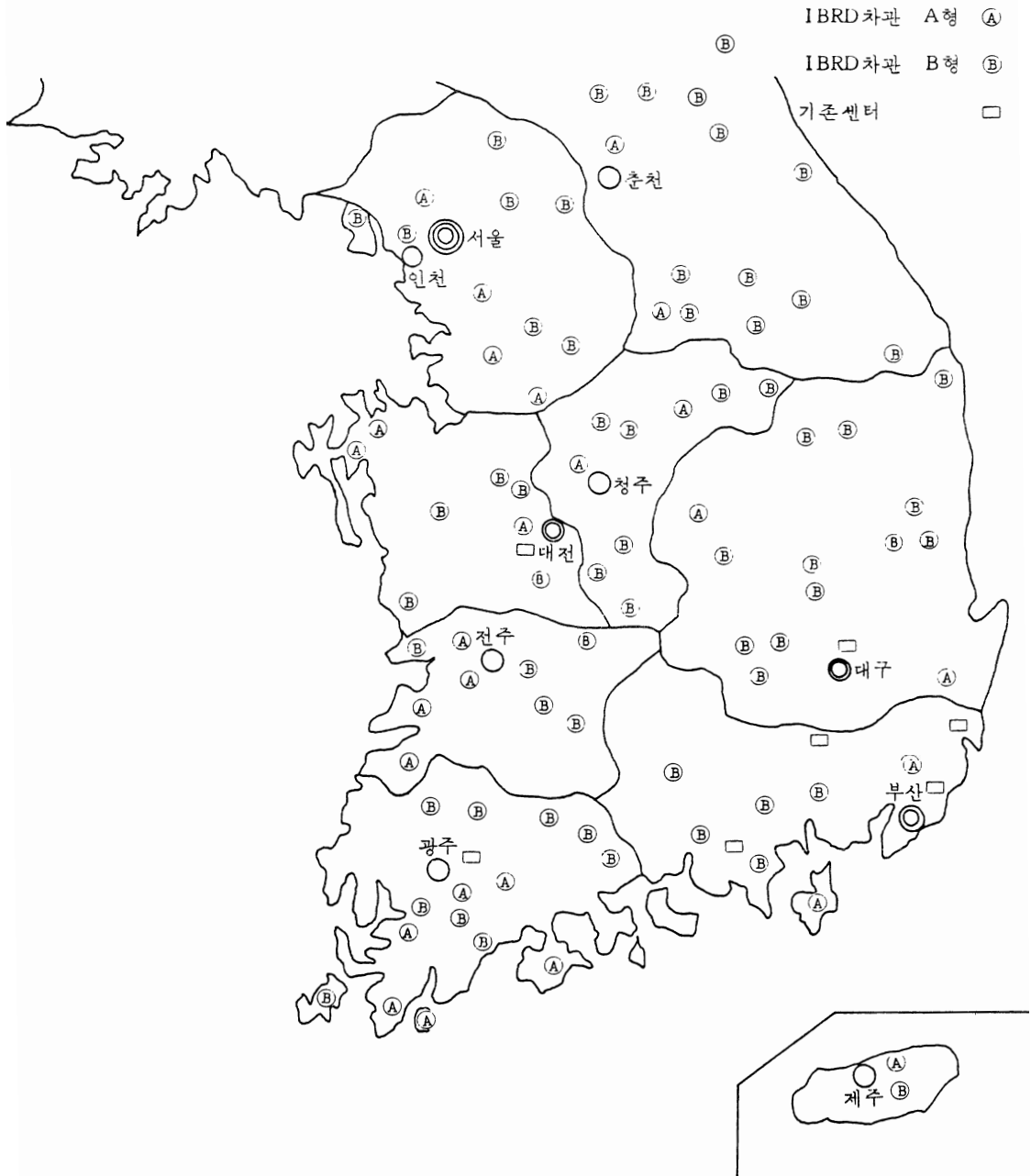
母子保健利用現況

道別	81 (14個所)	82 (28個所) A-13	83 (29個所) A-7	84 (18個所) A-6	計
京畿	廣州, 加平	楊平, 金浦, 江華 安城(A)	華城(A) 高陽(A) 抱川	龍仁(A) 漣川	11
江原	鐵原	華川, 楊口, 旌善 襄陽	高城, 麟蹄, 寧越, 平昌, 原城	春城(A) 原州(A) 太白	14
忠北	報恩, 槐山	中原(A) 陰城	沃川, 清原(A)	永同, 丹陽, 提原	9
忠南	禮山, 舒川	唐津(A) 瑞山(A)	天原, 錦山	大田(A) 天安	8
全北	沃溝, 任實	高敞(A) 扶安(A) 鎮安	茂朱, 完州(A) 益山(A)	長水	9
全南	珍島, 谷城	高興(A) 莞島(A) 和順(A) 長城, 潭陽	錦城(A) 靈岩 務安 長興, 求禮	水浦(A) 海南(A) 光陽	15
慶北	青松, 英陽	榮豐, 奉化, 星州 月城(A)	高靈, 漆谷, 善山, 尙州(A) 蔚珍	盈德, 義城, 軍威	14
慶南	統營	梁山(A) 巨濟(A) 義昌	泗川, 咸安, 山清		7
濟州		北濟州(A)	南濟州		2

범리 A...A型

□...都市地域

母子保健센터 分布圖



Ⅳ . 調 査 結 果

1 . 開院時期 및 建物利用實態

가. 開院時期

母子保健센터의 建物 建立은 工事入札, 工事期間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計劃年度の 翌年度에 完工되고 있으며 開院은 센터要員의 定員調整, 人力, 裝備 및 運營資金의 確保등으로 다시 遲延되어 센터建物 建立 翌年度에나 開院되는 實情에 있다. 即 1981年度の 14개 센터는 1983年初에 開院되었으며 1982年分은 1984년에 1983年分은 1985년에 各各 開院되었다.

調査日 現在 開院된 센터現況은 표 - 1 과 같이 施設이 完工된 71개 센터中 56個 센터이며 道別로 보면 忠北, 忠南, 濟州道가 完全 開院되었고 慶北 6個所, 全南 4個所, 江原 2個所, 京畿, 全北, 慶南 各各 1個所인 15個所가 未開院되었으며 未開院된 15個所는 年內開院 豫定이다.

表 - 1

道別 開院 現況

1985. 6. 30 現在

道 別	計 劃	施設完工	開 院	未 開 院
京 畿	11	9	8	1
江 原	14	10	8	2
忠 北	9	6	6	0
忠 南	8	6	6	0
全 北	9	8	7	1
全 南	15	12	8	4
慶 北	14	11	5	6
慶 南	7	7	6	1
濟 州	2	2	2	0
計	89	71	56	15

2. 人力現況

가. 定員對 現員

母子保健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가 內務部와 各道에 提示한 最小限의 醫療人力의 定員은 A型 15人(醫師 1人, 助產員 3人, 看護員 4人, 看護補助員 7人) B型 11人(醫師 1人, 助產員 3人, 看護員 3人, 看護補助員 4人)이다.

이와같은 醫療人力의 定員算出은 母子保健센터를 24時間 稼動 運營하기 위하여 算出된 定員이다. 그러나 實際 이와같은 定員에 대한 充員率은 各道마다 差異가 있다. 調査日 現在 定員(保健社會部가 提示한 定員 基準) 對 現員을 보면 全體 醫療人力 定員 861名에 現在員(手續中인 者 26名 包含) 490名으로 充員率은 56.9%이다. 其中 가장 充員率이 低調한 人力은 看護員 47.6%, 助產員 54.9%이다.

醫師의 경우는 1개 센터당 1名씩의 公衆保健醫를 定員으로 策定하고 있으며 이는 “農·漁村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에 의해 軍服務 대신에 農漁村保健醫療 脆弱地域에 配置하는 制度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동 制度가 存續하는 限 母子保健센터의 醫師 人力 充員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資質問題에 있어서는 臨床經驗의 不足등으로 問題가 되고 있는 實情이다.

即 最初年度에 開院된 14개 센터의 醫師 充員은 처음에는 產婦人科 專門醫를 配置함으로써 地域社會에서 좋은 反應을 받아오다가 翌年度부터는 需要·供給의 不均衡으로 一般醫를 配置하여 오고 있다.

71개 센터중 63個所에 醫師가 充員되고 未配置된 8個所는 教育

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中 産婦人科 專門醫 7名, 一般醫 54名이 充員되었다. (附錄 2 參照) 母子保健센터에 配置할 醫師(一般醫)는 將次 本人이 希望하는 專攻分野(産婦人科, 小兒科)와 센터勤務 希望與否를 參酌하여 配置하고 他地域 특히 保健支所 勤務의 交流는 制限함이 効率的일 것이다.

助産員의 主要任務는 正常分娩介助業務로 24時間 活動 運營되어야 한다. 따라서 助産員이 100% 充員되지 않은 狀態에서 24시간 稼動 運營한다는 것은 眞正한 意味의 24時間 運營이 아니라 할 수 있다.

調査日 현재의 助産員의 確保 現況을 보면 定員의 54.9%이다. 71개 센터中 助産員을 1名도 確保하지 못한 센터의 數가 7개소, 3名以上을 確保한 센터의 數가 14개소, 나머지 50개소는 1~2名의 助産員을 確保하고 있는 실정이다. 母子保健센터의 正常的인 稼動을 위해서는 保社部가 提示한 3名以上の 助産員을 確保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이다. (附錄 2 參照)

看護員은 妊産婦의 産前·後管理를 비롯하여 嬰幼兒의 豫防接種과 健康管理등 直接分娩介助를 除外한 母子保健과 家族計劃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이와같은 業務들은 分娩介助業務와 直間接的으로 連繫되는 事業內容으로 그 어느 하나 疎忽히 할 수 없는 內容이다.

그러나 看護員의 確保率은 다른 職種보다 低調한 47.6%로 1名도 確保하지 못한 센터의 數가 무려 19개소, 3名以上 確保한 센터의 數가 17개소 나머지 35개소는 1~2名만을 確保한 상태이다.

(附錄 2 參照)

—看護補助員은 助産員·看護員의 業務를 補助하는 것으로 이들의 定

員은 별도 追加로 純增員한 것이 아니고 既存 邑面 母子保健要員의 定員中에서 調整하도록 되어 있어 마땅히 그 充員率이 容易할 것이 라 생각되었으나 실제 充員率은 57.8%로 低調하며 71개 센터중 1名도 없는 센터의 數가 4개소나 되고 있다.

그밖에 行政要員과 調理要員, 洗濯婦, 清掃夫등의 기타 人力의 確保 現況은 行政要員이 46名 기타가 54名으로 行政要員은 센터의 業務 와 관련된 行政 및 統計業務, 一般 및 醫療裝備의 管理등을 擔當하 고 있으며 기타人力의 대부분은 清掃, 洗濯, 調理등 1~2개씩 兼職 하고 있고 별도의 定員이 定해져 있지 않은채 保健所 또는 郡廳등 他部署의 日傭雜給中에서 臨時로 雇傭하고 있다.(表 - 3 參照)

表 - 3 定員對現員

區 分	定 員	現 員	充 員 率
醫 師	71	63	88.7
助 產 員	213	117	54.9
看 護 員	233	111	47.6
看 護 補 助 員	344	199	57.8
計	861	490	56.9

나. 職級 現況

保健社會部가 提示한 助產員의 職級은 1개센터당 6級 1名과 7級 또는 專門職으로 充當하도록 하고 있다.⁴⁾

註 4) 前 3) 揭書와 同一

調査日 現在 助産員の 職級現況을 보면 6級 23.8%, 7級 52.4% 専門職 17.1% 나머지 6.7%은 8級 또는 9級을 받고 있다. 8 또는 9級을 받고 있는 助産員の 職級을 上向 調整하여 士氣를 振作 시키고 事前에 離職을 豫防할 수 있는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看護員の 職級은 全員 7級으로 補하도록 되어 있는 指針⁵⁾ 과는 달리 73.0%가 8級 또는 9級을 받고 있는 實情으로 看護員の 確保率이 低調한 主要原因의 하나가 바로 報酬水準이 他機關(保健診療員 및 一般病醫院)勤務者 보다 낮은데 있다고 볼때 看護員の 職級도 上向調整 되어야 한다고 본다.

看護補助員의 경우는 全員이 8 또는 9級에 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表 - 4 參照)

表 - 4

職 級 現 況

區 分 / 級						(%)
	6	7	専門職	8	9	計 (N)
助 産 員	23.8	52.4	17.1	4.8	1.9	100.0(105)
看 護 員	4.0	23.0	-	69.0	4.0	100.0(100)
看護補助員	-	-	-	42.2	57.8	100.0(180)

註 5) 前 3) 掲書와 同一

다. 報酬水準 比較

센터의 助産員・看護員의 報酬水準을 管内 農漁村地域 勤務者인 保健診療員과 一般病院 看護員과 比較하면 表 - 5 와 같다. 保健社會部가 提示한 센터의 助産員・看護員의 職級은 6級이 1人이고 기타는 7級 또는 專門職이다. 센터의 7級 1號俸 173,000 원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報酬의 比較는 保健診療員 1號俸이 242,700 원으로 140.3, 一般病院 勤務者 369,000 원으로 213.3 등으로 나타나 센터勤務者의 報酬가 크게 低率임을 實證해 주고 있다. 더구나 相當數의 助産員, 看護員이 8級 또는 9級을 받고 있어서 問題의 深刻性을 한층 增大시키고 있다.

表 - 5

報酬水準比較

(1 號俸基準)

센터 助産員・看護員				保健診療員	一般病院 看護員
6 級	7 級	8 級	9 級		
189,000	173,000	149,500	139,000	242,700	369,000
	(技術手當 包含)			本 俸 174,700 診療手當 68,000	(手當包含)
비교 109	100	86.4	80.3	140.3	213.3

라. 助産員・看護員 確保對策

各 센터마다 助産員・看護人力 確保를 위한 對策을 講究하고 있으나 낮은報酬등으로 인한 就業希望者의 不足으로 크게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大部分의 경우 隣近의 看護專門大學長 또는 助産・看護協會 支部長에게 센터 勤務 希望者의 斡旋을 要請하고 있으며 自體豫算을 確保하여 獎學生을 選拔 看護專門大學에 進學을 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政府에서는 保健獎學制度를 看護學生에게도 擴大適用하고 있으며 看護職公務員에 대한 助産員 委託教育도 實施中에 있으나 當面된 問題를 解消하지는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3. 管内 醫療機關 및 移送病醫院現況

가. 病醫院 및 助産所 現況

母子保健센터가 位置한 管内 醫療機關現況은 表 - 6 과 같이 病醫院 및 助産所가 있는곳이 各各 31.3%와 37.3%로 나타났으며 醫院이 없다고 한 地域의 4.5%에는 큰 病院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指定 移送病醫院 現況

母子保健센터에서 管理中 異常이 있거나 센터에서 管理하기가 어려운 妊産婦나 嬰幼兒를 移送하기 위하여 隣近病院 또는 醫院을 移送醫療機關으로 指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⁶⁾

調査日 現在 指定 病醫院 現況을 보면 表 - 7 과 같이 一般病院이 6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醫院 19.7%, 大學病院 9.1%, 道立 醫療院 4.5%의 順이다.

센터와의 平均 距離는 20 km이고 4 km 未滿 31.3%, 30 km 以上

註 6) 家族保健業務規程 第9條 4項, 保健社會部, 1985

26.0%, 10 ~ 20 km 20.3%의 順이며 所要時間은 平均時間이 25分 10分未滿 30.8%, 40分以上 24.6%, 20 ~ 30分 18.5% 順이다.
(表 - 8 參照)

表 - 6 管内醫療機關現況

區 分	(%)		
	있 다	없 다	計 (N)
病 院	31.3	68.7	100.0 (66)
醫 院	45.5	4.5	100.0 (66)
助 産 所	37.3	62.7	100.0 (66)

* 無應答센터 除外

表 - 7 指定移送病醫院現況

區 分	數	百 分 率
大 學 病 院	6	9.1
道 立 醫 療 院	3	4.5
一 般 病 院	44	66.7
醫 院	13	19.7
計	66	100.0

* 無應答센터 除外

表 - 8

指定移送病醫院까지의 距離 및 所要時間

距 離	數	百分率	所 要 時 間	數	百分率
4 km 미만	20	31.3	10 분 미만	20	30.8
4 ~ 10 km 미만	6	9.4	10 ~ 20 분 미만	10	15.4
10 ~ 20 km "	13	20.3	20 ~ 30 분 "	12	18.5
20 ~ 30 km "	8	12.5	30 ~ 40 분 "	7	10.8
30 km 이상	17	26.6	40 분이 상	16	24.6
計	64	100.0	計	65	100.0

* 無 應 答 센터 除 外

4. 諸 檢 査

센터에서 提 供 하는 產 前 管 理 서 어 비 스 에 必 要 한 檢 査 는 糖 · 蛋 白 尿 , 血 色 素 , 血 液 型 , 梅 毒 檢 査 등 이 다 .

이 와 같 은 檢 査 는 첫 訪 問 妊 婦 에 게 義 務 的 으 로 實 施 하 여 檢 査 結 果 에 따 라 適 切 한 對 策 을 講 究 하 야 하 나 그 實 態 는 각 센터 마 다 다 르 다 .

即 모든 妊 婦 에 게 檢 査 를 하 고 있 다 고 應 答 한 센터 는 糖 · 蛋 白 尿 檢 査 가 93.6% , 血 色 素 65.3% , 血 液 型 58.7% , 梅 毒 檢 査 가 69.3% 이 며 그 中 特 殊 한 경 우 選 別 으 로 實 施 하 고 있 다 고 應 答 한 경 우 는 糖 · 蛋 白 尿 檢 査 19.0% , 血 色 素 34.8% , 血 液 型 26.1% , 梅 毒 檢 査 22.4% 의 센터 로 나 타 났 다 . 전 혀 檢 査 를 하 지 않 고 產 前 診 察 을 하 는 경 우 도 있 는 데 이 와 같 은 경 우 糖 · 蛋 白 尿 檢 査 6.4% , 血 色 素 34.8% , 血 液 型 41.3% , 梅 毒 檢 査 30.6% 의 센터 로 나 타 났 다 . 모든 妊 婦 에 게 위 의 모든 檢 査 를 實 施 하 여 科 學 的 인 管 理 가 必 要 하 다 고 본 다 . (表 - 9 參 照)

表 - 9

諸 檢 査 實 施 率

檢 査	하고있다	안하고있다	하고있다		계	(N)
			전 원	선 별		
糖 · 蛋白尿	93.6	6.4	(74.6)	(19.0)	100.0	(56)
血 色 素	65.3	34.8	(28.3)	(34.8)	100.0	(46)
血 液 型	58.7	41.3	(32.6)	(26.1)	100.0	(46)
梅 毒	69.3	30.6	(46.9)	(22.4)	100.0	(49)

* 無 應 答 센터 및 未 開 院 센터 除 外

5. 事業 實 績

1985年 1月 1日 부터 1985年 6月 30日 까지 6個月 間의 事業 實 績은 表 - 10 과 같다. (月 平 均 算 出은 開 院 中인 56個 센터의 總 活 動 期 間 (月 數)인 311.3月로 나누어 計 算 되 었 다.)

妊 婦 登 錄 件 數의 分 布를 보면 實 績이 없는 센터가 3.6% 100件 未 滿의 센터가 26.8%, 101 ~ 200件인 센터가 26.8%, 201 ~ 300件인 경우가 17.8%의 順이고 400件 以上의 센터도 16.1%나 되며 센터당 月 平 均은 33件이다.

產 前 管 理는 實 績이 없는 센터 3.6%, 101 ~ 300件이 42.9%로 가장 많으며 100件 未 滿과 700件 以上의 센터가 같은 比 率로 各 各 19.6%로 다음의 順이며 센터당 月 平 均은 62件이다.

分 娩 介 助는 開 院 中인 56개 센터中 5個 所에서 한 件의 實 績도 없었 으며 1 ~ 50件이 41.1%로 가장 많고 51 ~ 100件 26.8%, 101 ~

150건 14.3%, 151~200 7.1%, 201건 이상의 센터가 1.7%로 센터당 月平均은 11건이다.

産後管理는 3개 센터에서 전혀 實績이 없었으며 100건 未滿의 센터가 55.4%, 101~200건 23.2%의 順이며 센터당 月平均은 23건이다.

嬰幼兒登錄은 2개 센터에서 實績이 없었고 센터당 月平均 44건이다.

嬰幼兒管理는 5개 센터에서 實績이 없었으며 센터당 月平均은 115건이다.

妊産婦 및 嬰幼兒의 管理中 母子保健센터에서 管理하기 어려운 妊産婦 및 嬰幼兒는 指定移送病醫院으로 依頼하도록 되어 있으나 期間中 14개 센터에서는 依頼件數가 전혀 없었으며, 1~10건이 39.3%, 11~20건 26.8%, 21~30건 5.4%, 31건 이상 3.6%로 센터당 月平均 1.6건으로 나타났다.

家族計劃施術中 子宮內裝置施術은 39개 센터에서 實施하지 않고 있었으며 實施하고 있는 17개 센터의 月平均 施術件數는 38건이다.

卵管施術은 1개 센터에서 遂行되어 기간중 16건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

表 - 10

事 業 實 績

妊 婦 登 録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2	3.6
- 100	15	26.8
101 - 200	15	26.8
201 - 300	10	17.8
301 - 400	5	8.9
+ 400	9	16.1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33 건

産 前 管 理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2	3.6
- 100	9	16.0
101 - 300	24	42.9
301 - 500	6	10.7
501 - 700	4	7.1
+ 700	11	19.6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62 건

分 娩 介 助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5	8.9
1 - 50	23	41.1
51 - 100	15	26.8
101 - 150	8	14.3
151 - 200	4	7.1
+ 201	1	1.7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11 건

産 後 管 理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3	5.4
- 100	31	55.4
101 - 200	13	23.2
201 - 300	5	8.9
301 - 400	1	1.7
+ 400	3	5.4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23 건

嬰幼兒登錄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2	3.5
- 100	21	37.5
101 - 300	18	32.1
301 - 500	9	16.1
501 - 700	2	3.5
+ 700	4	7.1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44 건

嬰幼兒管理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5	8.9
- 100	12	21.4
101 - 500	24	42.9
501 - 1,000	5	8.9
1,001 - 2,000	4	7.1
+ 2,000	6	10.7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115 건

依 賴 患 者 數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14	25.0
1 - 10	22	39.3
11 - 20	15	26.8
21 - 30	3	5.4
+ 31	2	3.6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1.6 건

子宮內裝置施術

건 수	센터수	백분율
0	39	69.6
1 - 10	3	5.4
11 - 20	4	7.1
21 - 30	4	7.1
31 - 40	3	5.4
41 - 50	0	0
+ 51	3	5.4
계	56	100.0

센터당 월평균 38 건
(월평균산출은 총실적÷실시기관수)

6. 豫 算

가. 歲出豫算

醫療人力과 運營豫算의 確保는 母子保健센터가 開院되기 以前부터 가장 큰 問題로 指摘되어 왔다. 大部分의 母子保健센터가 保健醫療 脆弱地域에 建立되어 있고 保健醫療 脆弱地域은 郡의 財政自立도가 낮으므로 運營費 全額을 自體的으로 充當하기란 매우 어려운 實情에 있다.

母子保健센터의 1985年度 歲出豫算編成方法을 보면 센터 單獨編成이 21.2% 뿐이고 保健所 豫算項目에 포함 編성한 경우가 78.8%이다. (表 - 11 참조) 앞으로 母子保健센터의 豫算은 加급적 保健所 豫算과 分離하여 編成하고 執行도 센터運營費에 局限함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된다.

保健社會부와 經濟企劃院이 共同으로 推定한 센터의 年間運營費는 人件費를 포함하여 A型이 83,994천원, B型이 56,220천원으로 策定하고 있다.

조사일 현재 1985年度 平均 歲出豫算은 14,390천원으로 (최고 47,776천원) A型이 平均 18,506천원으로 推定 所要豫算額의 22%, B型은 平均 12,333천원으로 所要額의 21.9%만을 確保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 12 참조)

1次年度 開院된 14개센터의 경우 不足된 運營費는 下半期에 自體的으로 追加更正豫算에서 充當되고 있었으나 財源不足으로 充足하지는 못하였다.

政府(保社部)는 1985년부터 센터 運營費의 5%가 되는 227百

萬원을 確保하여 A型 420 만원 B型 280 만원씩 一律적으로 支援 하고 있으며 向後 25%線까지 年次的으로 增額 支援할 計劃이다.

나. 歲入豫算

1985年1月부터 6月30日까지의 센터의 歲入豫算은 全體平均 이 2,201천원이며 最高로 많은 센터의 歲入은 7,971천원이다. 6個月間 平均센터당 2,201천원의 歲入을 年間 倍로 換算하여 4,402천원으로 推算해도 年間 運營費의 7%以內 (A型 7%, B型 6.6%) 에 不過하다.

歲入豫算의 構成比를 보면 分娩介助費가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 내고 있으며 다음이 産婦人科 및 嬰幼兒 管理費, 家族計劃 施術中 子宮內裝置 및 卵管施術費의 順이다.

이와같은 結果는 向後 센터의 活動이 活潑하여 機能을 다 한다 하더라도 財政補助없이 센터의 獨立採算이 어려움을 示唆해 주고 있다.

表 - 11 豫算編成方法

區 分	센터數	百分率
單 獨 編 成	14	21.2
保 健 所 外 共 同 編 成	52	78.8
計	66	100.0

* 無應答센터除外

表 - 12

歲出 및 歲入 豫算

(單位：千圓)

區 分	平 均	最 高	(N)
歲 出 豫 算 額	14,390	47,776	(33)
(A 型)	(18,506)	(47,776)	(11)
(B 型)	(12,333)	(34,179)	(22)
歲 入 豫 算 額	2,201	7,971	(50)
(A 型)	(2,917)	(6,745)	(16)
(B 型)	(1,864)	(7,971)	(34)

* 無 應 答 센터 除 外

7. 記 錄 및 報 告 書 式

센터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센터는 다음의 記 錄 및 報 告 書 式을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⁷⁾

記 錄 書 式

- 1) 產前管理 記 錄 簿
- 2) 嬰幼兒管理 記 錄 簿
- 3) 分娩管理 記 錄 簿
- 4) 摘出物 處 理 臺 帳
- 5) 妊産婦 入・退院 臺 帳

註 7) 家族保健業務規程 第 9 條 2 項 및 第 10 條 2 項, 保健社會部, 1985.

6) 入・退院 決定書

7) 分娩臺帳

8) 新生兒 身分確認表

9) 後送依頼書

報告書式

1) 母子保健센터 事業實績報告(分期)

現在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書式은 9種의 記錄書式과 1種의 報告書式으로 區分된다. 조사기간중 센터에서 위 書式中 一部를 使用하지 않고 있다고 應答한 경우는 表-13과 같다. 即 開院 運營中인 56개 센터의 경우 新生兒 身分確認表가 67.9%, 入・退院 決定書 14.3%, 妊産婦 入・退院臺帳과 後送依頼書는 各各 7.1%가 전혀 使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에서 定해진 書式外에 自體에서 開發하여 使用하고 있는 種類는 表-14에서와 같이 11種에 이르고 있어 記錄 및 報告書式의 研究가 되어야 할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表-13 非使用書式

書式名	센터수	백분율*
新生兒身分確認表	38	67.9
入退院決定書	8	14.3
妊産婦入退院臺帳	4	7.1
後送依頼書	4	7.1
嬰幼兒記錄簿	3	5.4
産前管理記錄簿	1	1.8
事業實績報告	1	1.8

* 開院運營中인 56개센터에 대한 非使用센터의 比率임.

表 - 14

自體開發使用書式

書 式 名	센터수	백분율*
日日業務日誌	13	23.2
藥品受拂臺帳	12	21.4
處 方 전	9	16.1
歲入徵收決定書	7	12.5
Doctor's order	6	10.7
妊産婦登錄臺帳	4	7.1
嬰幼兒 〃	4	7.1
Nurse's order	4	7.1
日日計算書	4	7.1
豫防接種名簿	4	7.1
B型肝炎豫防接種實施臺帳	4	7.1

* 開院運營中인 56개센터에 대한 使用센터의 比率임.

8. 施設 및 裝備

가. 施設

센터의 施設 規模는 A型이 325坪에 16病床, B型이 222坪에 6病床을 갖고 있어서 施設規模로 보아 앞으로 機能이 擴大되고 住民의 利用率이 增加한다 하더라도 施設의 規模面에서는 不足함이 없을 것이라 보아진다.

構造面에서 最初年度 建立分の 病床이 一律적으로 寢臺로만 되어

있던것과 달리 2次年度 建立分부터는 센터에 裁量權이 부여되어 조사일 현재 病床이 寢臺로만 된곳이 44.9%, 나머지 55.1%는 寢臺 또는 溫突로 되어 있다. (表 - 15 참조)

當初 센터建立 당시 設計上에 포함되지 않은 摘出物 處理場은 새로운 問題로 抬頭되고 있는데 即 關係法上(醫療法 同施行規則) 摘出物은 醫療人 責任下에 醫療機關이 燒却하거나 適當한 場所에 埋沒 또는 市長 郡守가 指定業者에게 委託하여 衛生的인 處理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조사일 現在 處理現況을 보면 自體處理場에서 處理하고 있는 경우가 27.1%, 指定業者에게 委託 處理가 8.5%이고 나머지 64.4%는 保護者에게 引繼하고 있는 實情이다.(表 - 16 참조) 이中 農家일 경우에는 집안에서 燒却할 수 있어 별 不便이 없으나 일부 都心地에서는 센터에서 處理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 數가 날로 增加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摘出物施設을 新築하여 自體處理가 되도록 改善하여야 할 것이다.

나. 裝 備

母子保健센터의 醫療裝備는 分娩裝備 5種, 産科裝備 11種, 檢診用 9種, 看護 및 治療用 21種, 消毒用 4種, 患者後送 및 弘報用裝備 各 1種등 都合 52種이며 이 裝備는 全部가 中央調達裝備로 母子保健센터에 補給되고 있다.(별첨 장비표 참조)

現在 保有裝備中에서 交替하고 싶은 裝備가 있는가에 대한 應答에서 表 - 17에서와 같이 煉炭用 高壓滅菌器를 電氣用 滅菌器로 交替하고 싶다고 應答한 경우가 41.1%로 가장 많으며 도플러 交替 7.1%, 기타 自動分娩臺를 비롯하여 16개 種類에 대해 交替했으

면 좋겠다고 應答했다.

保有裝備中에서 이제까지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裝備에 대해서는 表 - 18 에서와 같이 인큐베이터 17.9%, 晄 제어, 酸素人工呼吸器가 各 10.7% 등이다. 追加하고 싶은 裝備에 대해서는 Auto-clave 17.9%, 超音波器 12.5%, 新生兒 寢臺 10.7% 등이다. (表 - 19 참조)

表 - 15 病 床

區 分	센터數	百分率
寢 臺 專 用	31	44.9
溫 突 檢 용	38	55.1
計	69	100.0

* 無應答센터 除外

表 - 16 摘 出 物 處 理

區 分	센터數	百分率
自體處理場	16	27.1
指定處理人에게 引繼	5	8.5
保護者에게 引繼	38	64.4
計	59	100.0

* 無應答센터 除外

表 - 17

交替하고 싶은 裝備名

區 分	센터數	百分率
高 壓 滅 菌 器	23	41.1
도 플 러	4	7.1

表 - 18

非 使 用 裝 備 名

裝 備 名	센터數	百分率
인 큐 베 이 터	10	17.9
휠 체 어	6	10.7
酸 素 人 工 呼 吸 器	6	10.7
아 기 沐 浴 器	2	3.6

表 - 19

追 加 하 고 싶 은 裝 備 名

裝 備 名	센터數	百分率
Autoclave	10	17.9
超 音 波 器	7	12.5
新 生 兒 寢 臺	6	10.7
Baby Car	4	7.1
에 어 콘	4	7.1
드 레 싱 카	3	5.4
회 음 절 개 가 위	2	3.6

9. 洗濯 및 食事

가. 洗濯

分娩時의 洗濯物로는 分娩布外에도 醫療人의 까운등 雜多한 品目이 많이 있다. 이를 洗濯하는데 센터의 高用원이 하는 경우가 56.7%, 保健要員이 하는 경우가 35.0%, 業所와 契約하는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表 - 20 참조)

나. 食事

母子保健센터에 入院한 妊産婦의 食事は 센터에서 供給하는 경우가 55.7%, 産母집에서 운반해 오는 경우 26.2%, 業所와 契約 提供하는 경우가 18.0%로 나타났다. (表 - 21 참조)

表 - 20 洗濯物處理

區 分	數	百分率
센터 高 用 員	34	56.7
保 健 要 員	21	35.0
業 所 와 契 約	5	8.3
計	60	100.0

* 無應答센터 除外

表 - 21

産 母 食 事

區 分	數	百分率
센 터 에 서 提 供	34	55.7
産 母 집 에 서 運 搬	16	26.2
業 所 와 契 約	11	18.0
計	61	100.0

* 無應答센터 除外

10. 隘路 및 提言

便宜上 要約欄에 收錄함.

V. 調查結果의 要約 및 建議

1. 要約

世界銀行 借款事業에 의해 建立되는 總 89 개 母子保健센터中 1983 年度 建立分까지의 71 개 센터에 對하여 1985. 6. 30 일 현재의 그 運營實態를 郵便說問으로 調查하여 蒐集分析한 結果의 要約은 다음과 같다.

1) 母子保健센터의 開院時期는 建物建築, 開院을 위한 人力・裝備 運營豫算등의 確保問題로 建立計劃年度 2年 後이다.

2) 建物利用實態는 母子保健센터 單獨利用이 46.5%, 센터建物에 保健所 全部署 利用 35.2%, 一部 部署 利用 18.3% 등 保健所 共同利用이 53.5%이다.

3) 醫療人力의 充員率은 保社部가 定한 定員의 56.9%에 不過 하며 職種別로는 醫師 88.7%, 助産員 54.9%, 看護員 47.6%, 看護補助員 57.8% 등 低調한 實情이다.

4) 助産員, 看護員이 부여받은 職級은 保社部가 定한 職級에 未達된 경우가 助産員 6.7%, 看護員 73.0%이다.

5) 報酬水準比較에서 센터의 7級 1號俸을 100으로 볼때 保健診療員 140.3, 一般病院 勤務者 213.3으로 센터 勤務者의 報酬水準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助産員, 看護員 確保對策으로 隣近 看護專門大學長 또는 助産, 看護協會 支部長에게 就業 알선을 要請하고 있으며 1部 極少數 센터에서는 自體子算으로 獎學生을 選拔 進學시키고 있다. 또한 政

府에서는 看護員에게도 保健獎學制度를 擴大시켰으며 民間病院에 助産員 委託教育을 시키고 있으나 當面된 問題 解決에는 未洽하다.

7) 센터가 位置한 管内 醫療機關 現況은 病院이 있는 곳이 31.3%, 醫院 95.5%, 助産所 37.3%이다.

8) 指定移送 病醫院으로 大學病院 9.1%, 道立醫療院 4.5%, 一般病院 66.7%, 醫院 19.7%이며 指定病醫院까지의 平均距離는 20 km 平均所要時間은 25分이다.

9) 産前管理를 위하여 實施하는 諸 檢査中 전혀 實施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糖蛋白尿檢査 6.4%, 血色素 34.8%, 血液型 41.3%, 梅毒檢査가 30.6%의 센터이며, 檢査를 하고 있다고 應答한 경우도 選別的(必要하다고 醫療人이 느꼈을때)으로 實施하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다.

10) 1985.1.1 ~ 6.30까지의 事業實績은 센터別로 많은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即 分娩介助의 경우 기간중 實績이 한건도 없는 센터가 있는 반면 228건의 實績이 있는 센터도 있다. 센터당 月 平均 實績을 보면 妊婦登錄 33건, 産前管理 62건, 分娩介助 11건, 産後管理 23건, 嬰幼兒登錄 44건, 嬰幼兒管理 115건, 依賴患者數 1.6건, 子宮內裝置施術 17개 센터에서 38건 등이다.

11) 母子保健센터는 保健醫療 脆弱地域에 建立되고 있어 郡의 財政 自立度가 낮으므로 運營費 全額을 確保하기란 매우 어려운 實情이며 現在 保健社會부와 經濟企劃院이 推計한 年間 運營豫算의 約 22.0% (平均)만이 確保되고 있는 實情이다. (國庫補助金 5% 包含)

12) 1985.1 ~ 6.30까지 6個月間 센터당 平均 歲入은 2,201천원

으로年間收入을倍로換算하여4,402천원으로推算해도年間運營費의7%以內(A형7%,B형6.6%)에不過하며歲入源의構成比는分娩介助費,産婦人科및嬰幼兒管理費,家族計劃施術費의順이다.

13)母子保健센터에서使用하는記錄및報告書式은記錄書式9種,報告書式1種등총10種이다.이중1部센터에서使用하지않고있는書式과自體에서開發使用하고있는書式이各各7種과11種이다.

14)센터施設의規模는向後住民의利用率이 높아진다하여도適正하다고보며,病床도寢臺 또는溫突의混用이可能하도록되어있어問題가없겠으나摘出物處理問題는새로운問題로抬頭되고있다.

15)醫療裝備에있어서交替및追加하고싶은裝備가各센터마다多少間差異를보이고있으나 대체로交替하고싶은裝備로는煉炭用高壓滅菌器를電氣滅菌器로,追加하고싶은裝備로超音波器,新生兒寢臺등을提示하고있다.

16)洗濯物및食事에도問題가있는데即洗濯物を保健要員이處理하고있는경우가35%,食事を産母집에서운반하고있는경우가26.2%로나타났다.

17) 險路 및 提言

가)母子保健센터看護職(助産員)6級에게母子保健(센터)係長의補職을賦與해줄것과公衆保健醫는possible한限産婦人科專門醫의配置,運轉技士(엠브렌스)行政및雇傭職定員의配定을要求하고있다.

- 나) 分娩介助, 危險 및 夜間勤務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措置要望
- 다) 公衆保健醫에 대한 分娩介助 訓練과 센터 勤務 看護員에 대한 子宮內裝置施術訓練 機會 賦與
- 라) 센터 運營費의 國庫支援 增額과 財政 自立度を 감안한 差等支援 要望
- 마) 센터에서 移送한 妊産婦에게 2次機關에서 財政的인 惠擇을 賦與해 주기 위한 制度 마련과 經濟的으로 負擔能力이 없는 妊産婦에게 分娩補助費의 支援 또는 免除制度 마련
- 바) 醫療事故에 對備한 對策으로 保險制度의 導入 要望
- 사) 弘報 및 保健教育 資料의 支援
- 아) 豫防接種 藥品의 適期 供給
- 자) 母子保健센터의 具體的인 業務指針書 示達要望 등이다.

2. 建 議

1) 運營體制 改善에 관한 研究檢討

現在 母子保健센터의 運營은 保健所의 所屬部署로 公務員 行政 運營體制로 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業務內容으로 보아 晝夜間 24時間 稼動 運營되어야 하나 現在의 運營體制로는 諸般 規定의 制約으로 圓滑을 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母子保健센터의 運營體制는 病院體制와 類似한(臨床體制등) 體制로 變更되어야 하며 이때 人事, 報酬, 服務, 豫算執行등이 地域特性에 맞게 自律性이 賦與 되도록 考慮되어야 한다.

2) 現行 體制下에서의 센터 活性化 對策

가. 定員調整 및 센터內 指揮・監督體系確立

(1) 母子保健센터를 24時間稼動運營하기 위해서는 保健社會部가 提示한 最少限의 人力이 確保되어야 한다. 그러나 一線 母子保健센터의 定員과 職級은 各道 및 各郡마다 다르며 保健社會部가 提示한 定員과 職級에 未達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의 定員과 職級の 調整은 事前에 內務部와 協議하여 그 結果가 各道에 示達되도록 措置되어야 한다.

또한 現在 助産員・看護員中 8級또는 9級을 받고 있는 職級은 保健社會部の 當初 案대로 7級으로 上向 調整하여 士氣를 振作시켜 雜職을 防止하여야 한다.

補助人力中 行政要員 1人, 運轉技士 1人, 清掃, 洗濯을 兼한 雇傭員 1人, 調理補助 1人등의 定員도 確保되어야 한다.

(2) 母子保健센터의 運營責任은 市長 郡守에게 있고 實際的인 指揮監督의 責任은 保健所長에게 있다. 保健所內에서는 各 센터마다 다르나 大개의 경우 保健行政係 또는 家族保健係에 屬해 있어 센터 自體內의 責任者는 없이 業務上 指示는 센터의 醫師 또는 前任 助産員에 의해 運營되고 있다.

센터運營의 効率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센터 自體內에 業務上 指揮 監督 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現在의 人力中 醫師에게 센터의 責任을 賦與함이 業務上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醫師는 全員이 公衆保健醫로서 正式 公務員이 아님으로 現時點에서 責任을 賦與하는 것은 問題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問題는 비단 센터의 公衆保健醫의 身分問題뿐만 아니라 保健支所의 公衆保健醫의 身分問題와도 관련이 됨으로 政-

府가 推進檢討中인 公衆保健醫의 身分問題가 早速히 解決되어 센터 內의 指揮 監督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나. 運營豫算

母子保健센터가 保健醫療 脆弱地域에 建立되고 保健醫療 脆弱地域일 수록 財政 自立도가 낮아서 運營費 全額을 自體豫算으로 確保하기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本 調査結果에 의하면 年間運營豫算 確保率이 國庫支援金 5%를 包含하여 經濟企劃院과 保健社會部가 策定한 豫算額의 約 20% (A型 22%, B型 21.9%)를 若干 上廻하고 있는 實情이다.

母子保健事業은 福祉事業의 하나로 國家의 支援이 絶對로 必要한 事業이다. 따라서 센터 運營費는 國家가 50%, 地方自治團體(센터 自體歲入包含)에서 50%를 負擔하도록 制度化 하여야 한다.

또한 自體 歲入金은 센터事業에 再活用될 수 있도록 制度化하여 分娩 및 時間外 勤務手當등이 支給될 수 있도록 構究되어야 한다.

다. 教育訓練

(1) 센터에 勤務하는 醫師, 助産員, 看護員, 保健要員 및 行政要員에 대한 定規的인 基礎 및 補修教育和 不定規的인 세미나등을 通해 資質을 向上 시키는 물론 助産員·看護員에게는 子宮內裝置施術教育도 實施하여 어느 센터에서나 子宮內裝置施術을 容易하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醫師에게는 希望에 따라 腹腔鏡施術教育도 併行 實施하여 母子保健센터를 利用하는 妊産婦에게 家族計劃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2) 助産員 確保策으로 政府가 實施하고 있는 助産員 教育을 擴大 實施하고 教育場所도 運營이 잘되고 있는 政府의 母子保健센터

터에서 實施할 수 있는 制度가 講究되어야 한다.

라. 施設 및 裝備

(1) 母子保健센터 建物を 保健所의 全部署가 共同으로 利用하고 있는 경우 大部分의 保健所 建物を 센터와 隣近한 位置에 新築할 計劃으로 臨時로 利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우 센터를 利用하는 妊産婦나 嬰幼兒는 保健所를 利用하는 一般患者와의 接觸의 頻度가 잦아서 感受성이 銳敏한 센터 利用者の 感染이 憂慮된다. 따라서 保健所와 母子保健센터의 利用者は 嚴格히 分離되어야 함으로 共同利用하고 있는 保健所의 新築은 最優先 支援되어야 한다.

(2) 母子保健센터에서 分娩後 發生되는 摘出物이 自體에서 處理되고 있는 경우는 35.6% (自體處理場 27.1%, 指定處理人 8.5%) 뿐이고 나머지 64.4%는 保護者에게 引繼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中 農家를 除外한 나머지의 保護者는 處理가 困難하여 센터에서 處理해 주기를 願하고 있다. 따라서 各 센터마다 摘出物 處理場을 設置하여 衛生的인 自體處理가 可能하도록 講究되어야 하겠다.

(3) 保有 裝備中 交替 및 追加하고 싶은 裝備에 대해서는 檢討後 措置되어야 한다.

마. 諸檢査

母子保健 센터를 利用하는 모든 妊婦에게 産前管理에 必要한 諸檢査 (糖・蛋白尿, 血色索, 血液型, 梅毒) 등은 1回 또는 2회에 限하여는 義務적으로 實施하고 그밖에 必要할때는 醫療人의 判斷에 의하도록 되어야 한다.

바. 記錄 및 報告書式

센터에서 作成하는 記錄 및 報告書式은 母子의 健康管理上

必需的인 資料일뿐 아니라 統計生産과 政策資料에도 有益하게 利用될 資料이다. 따라서 잘못된 書式은 早速히 修正・補完하여 統計 및 政策資料로도 活用될 수 있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사. 保健教育 및 弘報資料의 支援

農村地域의 住民은 大體的으로 都市地域 住民에 比하여 教育水準이 낮고 母子保健에 대한 認識도 不足하며 住居環境도 貧弱하다. 이러한 處地에 있는 住民에게 올바른 知識을 普及하기 위한 保健教育과 弘報資料의 開發支援이 中央政府에 의해 支援되어야 한다.

아. 醫療事故에 대한 對策

센터에 勤務하는 醫師 또는 助産員은 醫療事故에 對備하여 保險制度의 導入을 要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는 比단 센터 勤務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保健支所의 公衆保健醫와 保健診療員에게도 關聯이 됨으로 좀더 幅넓게 適切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業務指針書 示達

母子保健센터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 關係 公務員의 業務遂行 指針이 되는 原則과 方法・節次등을 具體的으로 收錄된 業務指針書가 示達되어야 한다.

醫 療 裝 備 現 況

番號	裝 備 名		數 量	
	國 文	英 文	A 型	B 型
1	산과용분만대	Obstetrics Delivery Table	3	2
2	진공흡인기	Vacuum Extractor	1	1
3	태반감자	Placenta forceps	3	2
4	의 자	Revolving Stool Physician	2	1
5	이동조명등	Side Light	1	1
6	회음절개수술셋	Episiotomy Set	2	2
7	수 술 등	Operating Light	1	
8	인공호흡기	Resuscitator	1	1
9	산소운반기	Oxygen Carriage	1	1
10	산소유량계	Oxygen Flowmeter with Cylinder	2	2
11	유아용후두경	Laryngoscope Set Child	2	1
12	수건감사	Towel Clamp	12	8
13	지침기	Needle Holder Set	6	4
14	소파수술셋	D & C Set	2	2
15	튜브홀더	Tube Holder	5	3
16	튜브스탠드	Tube Stand	3	2
17	산과용진찰대	Gynecological Table	1	1
18	태아심박계	Doppler fetus Detector	2	2
19	영아체중계	Infant Scale	1	1
20	혈 압 계	Sphygmomanometer	4	3
21	성인용체온계	Scale for Adult	3	2
22	질 경	Vaginal Speculum	12	8
23	엑스선뷰박스	X-ray Viewer, 2 unit	1	1
24	유아용청진기	Stethoscope for Child	3	3

番號	裝 備 名		數 量	
	國 文	英 文	A 型	B 型
25	고정집경	Fixing Vaginal Speculum	1	1
26	가습기	Humidifier	3	2
27	미숙아보육기	Premature Infant Incubator	2	2
28	아기지지기	Baby Holder	4	3
29	아기목욕통	Baby water Bath	2	1
30	농 반	Kidney Basin	12	7
31	소독상자	Dressing Case	3	2
32	소독셀	Dressing Set	4	3
33	소독대	Dressing Car	3	2
34	소독통	Sterilizer Set	3	2
35	I.V 폴	I. V. pole	8	5
36	거즈통	Gauze Drum	20	11
37	물주전자	Pitcher	3	2
38	관장기	Enema Can	5	3
39	대 야	Basins for Solution	10	5
40	휠체어	Wheel Chair	2	2
41	휠스트레취	Wheel Stretcher	2	1
42	변 기	Bed pan	8	5
43	냉장고 (230-240)	Refrigerator (230-240)	3	2
44	“ (300 1)	Refrigerator (3001)	1	1
45	병원용침대(3 단)	Hospital Bed (3 Cranks)	10	4
46	“ (2 단)	Hospital Bed (2 Cranks)	6	2
47	대형고압멸균기	Portable steam pressure sterilizer (Large)	1	1
48	고압멸균기	Portable steam pressure sterilizer	1	1
49	자동소독기	Boiling Sterilizer	2	1
50	건조기	Dry Oven	1	1
51	구급차	Ambulance	1	1
52	비디오	Video Tape Recoder	1	1

參 考 文 獻

1.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人口部門計劃（案），人口部門實務計劃班， 1981. 4.
2.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12.
3. 母子保健센터 運營指針，保健社會部， 1984. 7.
4. 家族保健業務規程，保健社會部， 1985.
5. 梁在謨，“母子保健의 重要性和 그 推進方向”，母子保健事業 活性化를 위한 政策立案者 세미나 報告書，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5.

附 錄

1. 일 반 현 황

도 별	센 터 별	설 립 년 도	형	개 원 일 자	건 물 이 용 상 태	소 재 지
경 기	주 평	81	B	83. 4. 8	단	읍
	가 평	"	"	83. 3. 1	보 건 소 전	읍
	양 평	82	"	83. 7.	" 일	읍
	김 포	"	"	84. 1. 4	단	읍
	강 화	"	"	85. 6. 15	보 건 소 전	읍
	안 성	"	A	83. 8.	" 일	읍
	화 성	83	"	84. 9. 13	" 전	읍
	고 양	"	"	85. 2. 1	" 일	읍
	포 천	"	B	85. 7. 25	" "	읍
	철 원	81	B	83. 7. 12	단	읍
강 원	화 천	82	"	84. 9. 13	" "	읍
	구 양	"	"	84. 12. 1	보 건 소 일	읍
	정 신	"	"	84. 1. 5	" 전	읍
	양 양	"	"	84. 4. 10	" 일	읍
	고 성	83	"	85. 6. 1	단	읍
	인 제	"	"	85. 6. 20	보 건 소 전	읍
	평 창	"	"	85. 9. 1	" "	읍

도 별	센 터 별	설립년도	형	개원일자	건 물 이 용 상 태	소 재 지
충 북	영 월	83	B	85. 4. 4	보 건 소 전	영 월
	원 성	"	"	85. 8. 5	단	업 면
	보 은	81	B	83. 4. 23	단	보 은
	피 산	"	"	83. 5. 4	"	피 산
	중 원	82	A	84. 4. 12	보 건 소 일	충주시 연수동
충 남	음 성	"	B	84. 4. 2	단	음 성
	우 천	83	"	84. 12. 27	"	음 천
	청 원	"	A	84. 11. 27	"	청 원
	예 산	81	B	83. 4. 1	보 건 소 일	예 산
	서 천	"	"	83. 3. 21	단	서 천
충 전	당 진	82	A	84. 8. 13	보 건 소 일	당 진
	서 산	"	"	84. 7. 1	단	서 산
	천 원	83	B	84. 12. 5	"	천 원
	금 산	"	"	84. 11. 1	보 건 소 전	금 산
	구 실	81	B	83. 3.	단	구 실
충 북	음 성	"	"	83. 3. 12	보 건 소 일	음 성
	고 창	82	A	84. 5. 1	"	고 창
	부 안	"	"	84. 10. 6	"	부 안

진안군	82	B	85. 9.	단	독	진안군
무주군	83	"	85. 2. 5	"	"	무주군
완주군	"	A	84. 10. 8	"	"	완주군
익산군	"	"	84. 12. 18	"	"	익산군
진도군	81	B	82. 12. 27	보건소 전	부 독	진도군
곡성군	"	"	83. 2. 10	단	독	곡성군
홍도군	82	A	84. 9. 1	보건소 전	부 독	홍도군
완도군	"	"	84. 2. 25	단	독	완도군
화순군	"	"	84. 6. 20	보건소 전	부 독	화순군
장성군	"	B	84. 10. 1	단	독	장성군
양양군	"	"	84. 4. 1	"	"	양양군
금성시	83	A	85. 7. 1	보건소 일	부 독	금성시
영암군	"	B	85. 7. 1	단	독	영암군
무안군	"	"	84. 10. 10	보건소 전	부 독	무안군
장흥군	"	"	85. 9.	단	독	장흥군
구례군	"	"	85. 7. 11	"	"	구례군
송악군	81	B	83. 2. 9	"	"	송악군
양양군	"	"	83. 2. 1	보건소 전	부	양양군
영풍군	82	"	84. 12. 5	"	"	영풍군
봉화군	"	"	85. 7. 15	"	"	봉화군

전남

경북

도 별	센 터 별	설립년도	형	개원일자	건 물 이 용 상 태	소 재 지
경 남	성 주 군	82	B	85. 7. 1	보 건 소 전	성 주 읍
	월 성 군	"	A	84.12.12	단	경주시 동천동
	고 령 군	83	B	85. 9.	보 건 소 전	고 령 읍
	칠 곡 군	"	"	85. 9. 1	단	왜 관 읍
	신 산 군	"	"	84.11.26	"	신 산 읍
	상 주 군	"	A	85. 9.	보 건 소 전	상 주 읍
	울 진 군	"	B	85.10. 2	단	울 진 읍
	통 영 군	81	B	83. 1.19	보 건 소 일	광 도 읍
	양 산 군	82	A	84.10. 3	" 전	양 산 읍
	거 제 군	"	"	84. 4. 9	단	거 제 면
제 주	의 창 군	"	B	83.11.23	보 건 소 전	마산시 대외동
	사 천 군	83	"	85. 6. 1	" 일	사 천 읍
	함 안 군	"	"	85. 3. 1	" 전	가 야 읍
	산 청 군	"	"	85. 9. 초	단	산 청 읍
	북 제 주 군	82	A	83. 2.11	보 건 소 전	한 립 읍
	남 제 주 군	83	B	83. 8.31	단	남 원 읍

2. 인 력 현 황

범례 : 의사관중 (전) 전문의 표시임
 () 안의 숫자는 수속중인자임
 (명)

도 별	센 터	의 사	조 산 원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행 정 요 원	기 타	계
경 기	주 평	1	3	2	4	-	2	12
	광 가	1	3	-	3	-	-	7
	평 평	1	3	-	3	1	2	10
	김 포	1(전)	2	5	1	1	1	11
	강 화	1	3	1	-	-	-	5
	성 성	-	2	-	2	-	1	5
	성 성	-	3	4	4	1	1	13
	양 천	-	3	3	3	1	2	12
	천 천	-(1)	1(1)	1	3	1	1	7(2)
	소 소	5(1)	23(1)	16	23	5	10	82(2)
강 원	원 원	1(전)	2	1	3	-	-	7
	원 천	1	2	1	3	1	-	8
	군 군	1	1	-	2	1	-	5
	군 군	1	1	1	1	-	-	4
	군 군	1	1	3	3	1	-	9
	군 군	1	1	1	2	1	-	5
	군 군	1	1	1	3	1	-	5
	군 군	1	1	1	2	1	-	5
	군 군	1	2	-	3	-	-	5
	군 군	-	2	-	3	-	-	5

도 별	세 터 별	의 사	조 산 원	간 호 원	간 호 보조 원	행 정 요 원	기 타	계
충 부	평 창 군	1	-	4	4	1	1	11
	영 월 군	-	1	-(1)	2	1	1	5(1)
	원 성 군	1	-(1)	-(3)	-(3)	1	1(1)	3(8)
	소 계	8	11(1)	10(4)	23(3)	7	3(1)	62(9)
	보 은 군	1	1	1	4	1	1	9
	피 산 군	1	2	1	4	-	1	9
	중 원 군	1	2	1	6	1	1	12
	음 성 군	1	1	2	2	1	1	8
	옥 천 군	1	-(1)	2(2)	3	1	1	8(3)
	청 원 군	1	5	1	5	2	2	15
충 남	소 계	6	11(1)	8(2)	24	6	6	61(3)
	예 산 군	1	1	2	3	1	2	10
	서 천 군	1	2	3	1	-	2	9
	당 진 군	-(1)	2	2	4	1	3	12(1)
	서 산 군	-(1)	3	-	3	-	1	7(1)
	천 원 군	1	1	2	3	1	2	10
	금 산 군	1(천)	1	-	2	2	-	4
	소 계	4(2)	10	9	16	3	10	52(2)

전	부	군	1	3	1	2	1	3	-	3	-	1	7
전	구	군	2	3	1(전)	2	3	4	-	4	-	1	11
	실	군	2	3	1	2	3	5	1	5	1	1	13
	창	군	3	3	-	3	5	5	1	5	1	1	13
	안	군	2	2	1	2	3	3	1	3	1	-	9
	안	군	1	1	1	1	2	2	1	2	1	-	6
	주	군	4	3	1	4	5	5	1	5	1	-	14
	주	군	3	3	1	3	3	5	1	5	1	-	14
	산	군	19	19	6	19	32	32	6	32	5	-	87
	계	계	-	1	1	-	1	-	-	-	-	-	2
	도	군	1	2	1	1	2	2	-	2	1	1	7
	성	군	2	1	1	2	5	5	-	5	2	2	11
	흥	군	1	2	2(전1,일1)	1	4	4	1	4	2	2	12
	도	군	3	-	1	3	4	4	1	4	1	1	10
	순	군	2	-	1	2	3	3	1	3	1	1	8
	성	군	3	3	1	3	3	3	1	3	1	-	10
	양	군	2	3	1	2	1	1	1	1	2	2	10
	성	시	-	2(1)	1	-	2	2	1	2	1	1	7(2)
	영	군	1	-	-	1	2	2	1	2	1	-	4
	암	군	1	-	-	1	2	2	1	2	1	-	5
	안	군	-	1	1	-	1	1	1	1	1	-	5
	장	군	-	1	1	-	2	2	1	2	1	-	5

도 별	센 터 별	의 사	조 산 원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행 정 요 원	기 타	계
경 북	구 계	1	1	3	3	1	1	10
	소 청	12	16(1)	17(1)	31	9	11	96(2)
	영 송	1	1	-	1	-	2	5
	영 양	1(전)	1	-	3	-	-	5
	영 풍	1	1	2	2	1	1	8
	봉 화	1	1	2	3	1	-	8
	성 주	1	1	1	2	-	-	5
	월 성	1	3	-	2	-	-	6
	고 령	-(1)	1	3	3	-	-	7(1)
	칠 곡	1	1	1	3	1	1	8
경 남	선 산	-	-	1	1	-	-	2
	상 주	1	1	-	-	-	-	2
	울 진	1	2	2	2	1	-	8
	소 계	9(1)	13	12	22	4	4	64(1)
	통 영	1	-	-	4	-	-	5
	양 산	1	2	-	3	1	-	7
	거 제	1	-	-	4	1	1	7
	의 창	1(전)	2	1	2	1	-	7

제 주	사 천 군	1	2	-	-	-	-	-	3
	합 안 군	1	1	2	2	2	-	-	6
	산 청 군	1	-	-(2)	-(3)	-(1)	-	-(1)	1 (7)
	소 계	7	7	3 (2)	15 (3)	3 (1)	1 (1)	1 (1)	36 (7)
	북 제 주 군	1	2	4	4	1	2	2	14
	남 제 주 군	1	1	4	3	1	-	-	10
	소 계	2	3	8	7	2	2	2	24
	합 계	59 (4)	113 (4)	102 (9)	193 (6)	45 (1)	52 (2)	564 (26)	

3. 직 급 별 현 황

		조 산 원					계
		6 급	전문직	7 급	8 급	9 급	
경기	광주군	-	-	3	-	-	3
	가평군	1	2	-	-	-	3
	양평군	-	3	-	-	-	3
	김포군	-	-	2	-	-	2
	강화군	-	2	1	-	-	3
	안성군	1	1	-	-	-	2
	화성군	1	2	-	-	-	3
	고양군	1	-	2	-	-	3
	포천군	1	-	-	-	-	1
	소 계	5	10	8	0	0	23
강원	철원군	1	1	-	-	-	2
	화천군	1	1	-	-	-	2
	양구군	-	-	1	-	-	1
	정선군	-	-	1	-	-	1
	양양군	1	-	-	-	-	1
	고성군	1	-	-	-	-	1
	인제군	1	1	-	-	-	2
	평창군	-	-	-	-	-	0
	영월군	1	-	-	-	-	1
	원성군	-	-	-	-	-	0
소 계	6	3	2	0	0	11	
충북	보은군	-	-	1	-	-	1
	괴산군	-	2	-	-	-	2
	충원군	-	1	1	-	-	2
	음성군	-	-	1	-	-	1
	옥천군	-	-	-	-	-	0

(조 산 원 · 간 호 원)

(명)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 급	7 급	8 급	9 급	계
-	-	-	2	2	-	-	2	2	4
-	-	-	-	0	-	-	3	-	3
-	-	-	-	0	-	-	1	2	3
-	1	1	2	4	-	-	1	-	1
-	-	1	-	1	-	-	-	-	0
-	-	-	-	0	1	-	1	-	2
-	3	1	-	4	-	-	1	3	4
-	-	3	-	3	-	-	-	3	3
-	-	1	-	1	-	-	1	2	3
0	4	7	4	15	1	0	10	12	23
-	1	-	-	1	-	-	-	3	3
-	-	1	-	1	-	-	2	1	3
-	-	-	-	0	-	-	2	-	2
-	-	1	-	1	-	-	1	-	1
-	-	3	-	3	-	-	3	-	3
-	-	-	-	0	-	-	1	1	2
-	-	-	-	0	-	-	2	1	3
-	-	4	-	4	-	-	2	2	4
-	-	1	-	1	-	-	1	1	2
0	1	10	0	11	0	0	14	9	23
1	-	-	-	1	-	-	1	3	4
-	-	1	-	1	-	-	2	2	4
-	1	-	-	1	-	-	2	2	4
-	1	1	-	2	-	-	2	-	2
-	1	1	-	2	-	-	2	1	3

		조 산 원					
		6 급	전문직	7 급	8 급	9 급	계
	청원군						
	소 계	0	3	3	0	0	6
충남	예산군	-	-	1	-	-	1
	서천군	-	-	1	-	1	2
	당진군	1	1	-	-	-	2
	서산군	-	-	3	-	-	3
	천원군	-	-	1	-	-	1
	금산군	1	-	-	-	-	1
	소 계	2	1	6	1	1	10
전북	옥구군	1	-	-	-	1	2
	임실군	-	-	2	-	-	2
	고창군	-	1	1	-	-	2
	부안군	1	-	2	-	-	3
	진안군	-	-	1	-	-	1
	무주군	-	-	1	-	-	1
	완주군	1	-	3	-	-	4
	익산군	1	-	2	-	-	3
	소 계	4	1	12	0	1	18
전남	진도군	-	-	-	-	-	0
	곡성군	-	-	1	-	-	1
	고흥군	1	-	1	-	-	2
	완도군	-	-	1	-	-	1
	화순군	1	-	2	-	-	3
	장성군	-	-	2	-	-	2
	담양군	1	-	2	-	-	3
	금성시	1	-	1	-	-	2
	영암군	-	-	-	-	-	0
	무안군	-	-	-	1	-	1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 급	7 급	8 급	9 급	계
1	3	3	0	7	0	0	9	8	17
-	2	-	-	2	-	-	3	-	3
-	-	3	-	3	-	-	1	-	1
-	-	2	-	2	-	-	1	3	4
-	-	-	-	0	-	-	-	4	4
-	2	-	-	2	-	-	1	2	3
-	-	-	-	0	-	-	-	2	2
0	4	5	0	9	0	0	6	11	17
-	1	-	-	1	-	-	2	1	3
-	1	2	-	3	-	-	4	-	4
1	-	2	-	3	-	-	1	3	4
-	2	1	-	3	-	-	3	2	5
-	-	2	-	2	-	-	1	2	3
-	-	1	-	1	-	-	1	1	2
-	-	3	-	3	-	-	1	3	4
-	2	1	-	3	-	-	1	4	5
1	6	12	0	19	0	0	14	16	30
-	-	1	-	1	-	-	-	-	0
-	-	2	-	2	-	-	2	-	2
-	1	-	-	1	-	-	-	4	4
-	-	2	-	2	-	-	-	4	4
-	-	-	-	0	-	-	1	3	4
-	-	-	-	0	-	-	1	2	3
-	-	2	-	2	-	-	1	2	3
-	-	3	-	3	-	-	-	1	1
-	1	1	-	2	-	-	-	2	2
-	-	-	-	0	-	-	1	1	2

		조 산 원					
		6 급	전문직	7 급	8 급	9 급	계
경북	장흥군	-	-	-	-	-	0
	구례군	-	-	1	-	-	1
	소 계	4	0	11	1	0	16
	청송군	-	-	1	-	-	1
	영양군	-	-	1	-	-	1
	영풍군	-	-	1	-	-	1
	봉화군	-	-	1	-	-	1
	성주군	1	-	-	-	-	1
	월성군	-	-	3	-	-	3
	고령군	-	-	1	-	-	1
	칠곡군						
	선산군	-	-	-	-	-	0
	상주군						
	울진군	1	-	-	1	-	2
소 계	2	0	8	1	0	11	
경남	통영군	-	-	-	-	-	0
	양산군	-	-	2	-	-	2
	거제군	-	-	-	-	-	0
	의창군	1	-	1	-	-	2
	사천군	-	-	-	2	-	2
	합안군	-	-	-	1	-	1
	산청군						
	소 계	1	0	3	3	0	7
제주북	제주군	1	-	1	-	-	2
	남제주군	-	-	1	-	-	1
	소 계	1	0	2	0	0	3
합 계		25	18	55	5	2	105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 급	7 급	8 급	9 급	계
-	-	1	-	1	-	-	1	1	2
-	-	3	-	3	-	-	1	2	3
0	2	15	0	17	0	0	8	22	30
-	-	-	-	0	-	-	-	1	1
-	-	-	-	0	-	-	-	3	3
-	-	2	-	2	-	-	-	2	2
-	2	-	-	2	-	-	1	2	3
-	-	1	-	1	-	-	1	1	2
-	-	-	-	0	-	-	1	1	2
1	-	2	-	3	-	-	1	2	3
-	1	-	-	1	-	-	-	1	1
-	-	2	-	2	-	-	1	1	2
1	3	7	0	11	0	0	5	14	19
-	-	-	-	0	-	-	4	-	4
-	-	-	-	0	-	-	1	2	3
-	-	-	-	0	-	-	2	2	4
-	-	1	-	1	-	-	1	1	2
-	-	-	-	0	-	-	-	-	0
1	-	1	-	2	-	-	-	2	2
1	0	2	0	3	0	0	8	7	15
-	-	4	-	4	-	-	1	3	4
-	-	4	-	4	-	-	1	2	3
0	0	8	0	8	0	0	2	5	7
4	23	69	4	100	1	0	76	104	181

4. 관내의료기관 및 후송병의원 현황

정기	병 원 의 원 수				후 송 병 의 원		
	병 원	의 원	원 수	조 산 소	형 태	거 리 (km)	소 요 시 간(분)
광주군	1	23	2	2	대학	0.2	5
가평군	-	9	-	-	도립	30.0	25
양평군	1	3	-	-	병원	2.0	10
김포군	-	16	1	1	"	18.0	20
강화군	1	7	1	1	"	1.5	3
안성군	1	16	3	3	병원	1.5	5
화성군		응 답			"	0.5	5
고양군	-	1	-	-	"	1.8	5
포천군	1	15	1	1	"	22.0	30
소 계	5	90	8	8			
강원							
철원군	-	5	1	1	의원	7.0	10
화천군	-	3	2	2	병원	40.0	50
양구군	-	3	1	1	병원	44.0	60
정선군	-	3	-	-	병원	44.0	60
양양군	-	2	2	2	도립	22.0	20
고성군	-	1	-	-	병원	25.0	25
인제군	1	1	-	-	"	1.0	5

평창군	-	2	-	-	16.0	20
영월군	2	8	-	-	0.6	3
원성군	-	무응답	-	-	4.2	15
계	3	28	5	-		
충북	-	5	-	-	48.0	50
보은군	-	3	-	-	40.0	50
괴산군	-	4	1	-	2.0	5
충원군	1	9	-	-	1.5	5
음성군	1	2	1	-	0.1	3
우천군	-	무응답	-	-	8.0	8
청원군	2	23	2	-		
충남	-	15	1	-	1.5	5
예산군	-	5	1	-	43.0	30
서천군	1	5	-	-	24.0	30
당진군	3	18	-	-	2.0	5
서산군	-	8	2	-	10.0	20
천원군	-	9	2	-	40.0	40
금산군	4	60	6	-		
계	-	무응답	-	-		
충북	-	5	-	-	12.0	25
구운	-	5	-	-	28.0	30
임실군	-		-	-		

		병 의 원 수			후 상 병 의 원		
병 원	의 원	조 산 소	형 태	거 리 (km)	소 요 시 간(분)		
고창군	-	7	의원	27.0	30		
부안군	-	12	병원	무	응		
진안군	-	3	의원	1.0	5		
무주군	1	2	병원	24.0	30		
완주군	-	4	대학	12.0	30		
익산군	-	1	"	17.0	15		
소 계	1	34					
진도군	2	4	병원	90.0	50		
목성군	-	3	의원	1.0	1		
고흥군	-	6	병원	61.0	70		
완도군	-	3	"	무	응		
화순군	-	8	대학	10.0	20		
장성군	-	3	의원	0.5	5		
담양군	1	4	"	25.0	20		
금성시	-	12	"	4.0	15		
영암군	-	4	병원	52.0	50		
무안군	1	6		무	응		
장흥군	-	6	병원	15.0	20		

전 남

정 부	구례군	-	4	-	병원	38.0	40
	소제	4	63	5			
	청송군	-	2	-	병원	55.0	80
	영양군	-	2	-	"	60.3	80
	영풍군	-	1	-	"	13.0	10
	봉화군	-	2	-	"	16.0	15
	성주군	-	5	-	"	35.0	40
	월성군	1	8	2	의원	2.0	10
	고령군	-	2	-	무	응	답
	칠곡군	-	6	-	무	응	답
정 남	신산군	-	4	-	병원	8.0	25
	상주군	3	17	-	무	응	답
	울진군	1	10	1	병원	85.0	90
	소제	5	59	3			
	통영군	-	-	-	병원	4.0	5
	양산군	-	7	-	의원	0.5	3
	거제군	1	5	2	병원	12.0	10
	의창군	1	-	-	의원	1.5	10
	사천군	-	2	-	병원	15.0	20
	함안군	-	3	-	의원	0.7	2

	병 의 원 수			후 송 병 의 원		
	병 원	의 원	조 산 소	형 태	거 리 (km)	소 요 시 간 (분)
산청군	1	-	-			
소 계	3	17	2			
제주 북제주군	-	6	-	병원	30.0	40
남제주군	-	6	1	도립	12.0	15
소 계	0	12	1			
합 계	19	386	34			

5 . 검 사

* ○ : 검사를 전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 : 검사를 특수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 : 검사를 안하고 있다.
 - : 무응답 및 미개원

		당 · 단백질	혈 색 소	혈 액 형	매 독
경기	광주군	○	○	○	○
	가평군	○	○	○	○
	양평군	○	○	○	○
	김포군	○	○	○	○
	강화군	○	-	-	-
	안성군	-	-	-	-
	화성군	○	×	○	○
	고양군	○	-	-	△
	포천군	○	-	-	-
강원	철원군	△	△	△	△
	화천군	△	△	△	△
	양구군	○	-	○	○
	정선군	○	○	○	○
	양양군	○	-	-	-
	고성군	○	○	○	○
	인제군	○	○	○	○
	평창군	-	-	-	-
	영월군	○	○	×	×
충북	원성군	-	-	-	-
	보은군	○	△	△	△
	괴산군	△	×	×	×

	당·단백뇨	혈 색 소	혈 액 형	매 득
충원군	○	○	○	○
음성군	○	×	×	×
옥천군	○	○	×	○
청원군	○	-	-	-
충남 예산군	△	×	×	×
서천군	○	△	×	△
당진군	○	○	△	△
서산군	○	×	×	○
천원군	○	-	-	-
전북 금산군	○	△	△	△
옥구군	○	○	○	○
임실군	△	-	-	-
고창군	△	×	×	△
부안군	○	×	×	×
진안군	-	-	-	-
무주군	○	-	-	-
완주군	○	△	×	△
익산군	○	-	-	-
전남 진도군	○	-	-	○
곡성군	○	△	△	×
고흥군	○	○	○	○
완도군	○	×	×	×
화순군	△	-	-	-
장성군	×	×	×	×
담양군	○	△	△	○
금성시	○	△	-	○
영암군	○	△	×	×
무안군	△	-	-	-

		당·단백뇨	혈 색 소	혈 액 형	매 독
	장흥군	△	-	-	-
	구례군	○	○	○	○
경북	청송군	○	×	○	○
	영양군	○	△	△	△
	영풍군	○	○	△	○
	봉화군	-	-	-	-
	성주군	○	△	△	△
	월성군	△	△	△	○
	고령군	×	×	×	×
	칠곡군	-	-	-	-
	선산군	×	×	×	×
	상주군	-	-	-	-
	울진군	○	○	△	○
경남	통영군	×	×	×	×
	양산군	○	○	○	○
	거제군	○	×	×	×
	의창군	○	-	-	-
	사천군	○	×	×	×
	합안군	△	-	-	-
	산청군	-	-	-	-
제주	북제주군	○	×	×	×
	남제주군	△	-	-	-

6. 사 업 실 적

		임부등록	산전관리	분만개조	산후관리
경 기	광주군	228	333	125	190
	가평군	169	226	63	6
	양평군	56	124	1	0
	김포군	260	380	54	88
	강화군	468	1,135	99	421
	안성군	148	258	0	98
	화성군	581	1,869	194	194
	고양군	275	836	94	80
	포천군	-	-	-	-
강 원	철원군	294	346	51	187
	화천군	58	129	12	42
	양구군	170	170	32	47
	정선군	7	7	0	0
	양양군	99	253	50	50
	고성군	24	24	1	1
	인제군	14	28	1	1
	평창군	-	-	-	-
	영월군	15	15	2	3
충 북	원성군	-	-	1	-
	보은군	439	480	151	248
	괴산군	267	0	81	81
	충원군	0	255	129	176
	음성군	229	292	138	157
	옥천군	100	238	58	38
	청원군	523	523	228	228

(85. 1.1 ~ 6.30)

영유아등록	영유아관리	의뢰환자수	(건)	
			가족계획시술 (IUD)	가족계획시술 (난관)
182	208	12	0	-
141	141	15	0	-
5	5	1	0	-
45	0	1	15	-
824	2,360	17	11	-
262	384	0	0	-
304	1,077	0	0	-
554	3,375	0	0	-
-	-	-	-	-
790	1,355	34	9	-
67	135	2	0	-
88	85	15	0	-
10	10	0	0	-
50	0	2	0	-
1	0	0	0	-
1	15	1	0	-
-	-	-	-	-
26	26	0	0	-
-	-	-	-	-
380	2,311	4	30	-
80	208	0	0	-
348	258	34	0	-
336	342	13	34	-
58	58	2	107	-
250	250	0	0	-

		임부등록	산전관리	분만개조	산후관리	
충남	예산군	153	533	66	82	
	서천군	42	422	140	162	
	당진군	318	780	111	302	
	서산군	253	1,100	101	5	
	천원군	182	281	22	38	
	금산군	309	312	131	99	
전북	옥구군	495	785	77	235	
	임실군	115	161	64	114	
	고창군	328	556	123	443	
	부안군	354	723	98	128	
	진안군	-	-	-	-	
	무주군	330	180	0	85	
	완주군	270	588	186	195	
	익산군	109	218	155	155	
	전남	진도군	36	23	24	86
		곡성군	128	116	32	87
		고흥군	225	235	60	116
완도군		111	175	41	244	
화순군		257	691	36	226	
장성군		89	69	30	30	
담양군		86	138	42	57	
금성시		-	-	-	-	
영암군		-	-	-	-	
무안군		493	1,464	0	1,399	
장흥군		-	-	-	-	
구례군		-	-	-	-	

영유아등록	영유아관리	의뢰환자수	가족계획시술 (IUD)	가족계획시술 (난관)
380	3,400	7	0	-
99	918	12	0	-
280	1,155	29	0	-
619	5,130	22	0	-
221	337	1	0	-
0	0	9	0	-
301	1,601	16	18	-
116	179	9	23	16
438	873	16	0	-
108	219	24	0	-
-	-	-	-	-
1,683	177	2	3	-
355	573	12	0	-
155	933	20	0	-
86	2	0	0	-
298	736	4	10	-
126	194	2	0	-
118	291	1	0	-
416	416	11	25	-
151	151	0	12	-
168	139	6	32	-
-	-	-	-	-
-	-	-	-	-
1,954	4,247	0	24	-
-	-	-	-	-
-	-	-	-	-

		임부등록	산전관리	분만개조	산후관리
경 북	청 송 군	56	90	14	18
	영 양 군	88	246	32	22
	영 풍 군	0	61	24	10
	봉 화 군	-	-	-	-
	성 주 군	-	-	-	-
	월 성 군	131	219	25	112
	고 령 군	-	-	-	-
	칠 곡 군	-	-	-	-
	선 산 군	62	42	24	25
	상 주 군	-	-	-	-
	울 진 군	-	-	-	-
	경 남	통 영 군	107	86	56
양 산 군		124	316	21	50
거 제 군		154	272	61	137
의 창 군		121	117	52	95
사 천 군		64	103	3	3
함 안 군		121	163	48	87
산 청 군		-	-	-	-
제 주	북제주군	209	181	9	87
	남제주군	63	63	0	0

영유아등록	영유아관리	의뢰 환자수	가족계획시술 (IUD)	가족계획시술 (난관)
14	14	14	141	-
32	32	4	36	-
0	0	15	0	-
-	-	-	-	-
-	-	-	-	-
119	176	14	0	-
-	-	-	-	-
-	-	-	-	-
62	33	5	0	-
-	-	-	-	-
-	-	-	-	-
37	54	0	0	-
37	128	0	0	-
243	439	1	0	-
52	198	17	0	-
14	134	4	0	-
104	155	2	0	-
-	-	-	-	-
137	164	2	117	-
97	97	0	0	-

7.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천)	세출(천)	예산편성방법
경 기	광주군	7,971	22,511	단독
	가평군	1,503	-	공동
	양평군	27	34,179	-
	김포군	3,311	-	공동
	강화군	-	-	"
	안성군	0	10,479	"
	화성군	5,328	26,733	"
	고양군	3,225	-	"
	포천군	-	7,467	단독
강 원	철원군	2,931	-	공동
	화천군	272	-	"
	양구군	890	16,071	"
	정선군	0	3,935	"
	양양군	1,535	-	"
	고성군	34	8,485	단독
	인제군	34	-	공동
	평창군	-	-	"
	영월군	382	-	"
	원성군	-	27,476	단독
	충 북	보은군	5,584	-
괴산군		6,402	14,951	"
충원군		3,685	19,104	단독
음성군		3,511	20,691	"
옥천군		1,759	16,425	"
청원군		6,745	28,863	공동
-		-	-	-

			세입예산(천)	세출(천)	예산편성방법	
충 남	예산군		2,128	10,883	공동	
	서천군		4,530	6,300	"	
	당진군		3,725	-	"	
	서산군		2,842	21,610	"	
	천원군		501	8,432	-	
	금산군		3,679	-	공동	
전 북	옥구군		2,374	8,005	"	
	임실군		2,916	-	"	
	고창군		4,008	8,766	단독	
	부안군		2,361	-	공동	
	진안군		-	6,755	-	
	무주군		-	-	공동	
	완주군		5,341	-	"	
	익산군		4,268	47,776	단독	
	전 남	진도군		614	-	공동
		곡성군		1,927	10,786	단독
		고흥군		1,633	-	공동
완도군			400	14,712	"	
화순군			882	7,825	단독	
장성군			722	-	공동	
담양군			986	3,719	단독	
금성시			-	-	공동	
영암군			-	7,069	"	
무안군			0	-	"	
장흥군			-	-	"	
구례군		-	-	"		

			세입예산 (천)	세출 (천)	예산편성방법
경 북	청송군	516	-	-	공 동
	영양군	1,399	-	-	"
	영풍군	602	-	-	"
	봉화군	-	-	-	"
	성주군	-	-	-	"
	월성군	615	6,411	-	"
	고령군	-	-	-	"
	칠곡군	-	-	-	"
	선산군	0	8,326	-	"
	상주군	-	-	-	"
	울진군	-	16,374	-	단 독
경 남	통영군	1,273	-	-	공 동
	양산군	886	-	-	-
	거제군	734	11,292	-	단 독
	의창군	1,555	-	-	-
	사천군	67	7,138	-	-
	함안군	1,084	-	-	공 동
	산청군	-	-	-	"
제 주	북제주군	352	-	-	"
	남제주군	9	5,303	-	"

* 세입예산은 1985.1.1 ~ 6.30 까지의 세입임.

8. 기타시설 및 지원

적출물처리 :

자 체 : 자체 적출물 처리장에서 처리

지정처리인 : 지정처리인에게 인계처리

보 호 자 : 보호자에게 인계처리

병 실 :

온돌 (숫자) : 온돌로 개조한 방의 개수

세 탁 :

고 용 인 : 센터고용원

업 소 : 업소와 계약

보 건 요 원 : 센터보건요원

식 사 :

센 터 : 센터에서 제공

업 소 : 업소와 계약

산 모 집 : 산모집에서 준비

		적출물처리	병 실	세 탁	식 사
경 기	광 주 군	보 호 자	침 대	업 소	센 터
	가 평 군	"	"	고 용 원	"
	양 평 군	자 체	온 돌 (1)	"	"
	김 포 군	보 호 자	침 대	-	"
	강 화 군	"	"	보 건 요 원	산 모 집
	안 성 군	-	온 돌 (3)	업 소	업 소
	화 성 군	보 호 자	온 돌 (3)	고 용 원	센 터
	고 양 군	"	온 돌 (4)	"	"
	포 천 군	-	"	-	-
강 원	철 원 군	보 호 자	침 대	고 용 원	센 터
	화 천 군	"	"	보 건 요 원	업 소
	양 구 군	"	온 돌 (1)	"	산 모 집
	정 선 군	"	침 대	업 소	업 소
	양 양 군	"	온 돌 (1)	보 건 요 원	산 모 집
	고 성 군	"	온 돌 (2)	"	"
	인 제 군	"	온 돌 (5)	"	업 소
	평 창 군	-	-	-	-
	영 월 군	자 체	온 돌 (2)	업 소	센 터
원 성 군	-	-	-	-	
충 북	보 은 군	보 호 자	침 대	고 용 원	센 터
	괴 산 군	자 체	온 돌 (1)	"	"
	중 원 군	보 호 자	온 돌 (1)	"	"
	음 성 군	"	침 대	"	"
	옥 천 군	"	"	"	"
	청 원 군	지 정 처 리 인	온 돌 (4)	"	"

		적출물처리	병 실	세 탁	식 사
충 남	예 산 군	보 호 자	온돌(2)	고 용 원	센 터
	서 천 군	"	온돌(2)	"	"
	당 진 군	"	온돌(2)	"	"
	서 산 군	"	온돌(3)	"	"
	천 원 군	"	침 대	"	"
	금 산 군	"	온돌(2)	"	"
전 북	옥 구 군	자 체	침 대	고 용 원	센 터
	임 실 군	"	온돌(1)	"	업 소
	고 창 군	"	침 대	"	센 터
	부 안 군	보 호 자	"	보건요원	산 모 집
	진 안 군	-	"	-	-
	무 주 군	보 호 자	"	고 용 원	센 터
	완 주 군	"	온돌(4)	업 소	"
	익 산 군	"	온돌(4)	고 용 원	"
	전 남	진 도 군	자 체	침 대	고 용 원
곡 성 군		보 호 자	온돌(1)	"	"
고 흥 군		자 체	침 대	"	센 터
완 도 군		"	"	"	산 모 집
화 순 군		보 호 자	온돌(1)	보건요원	"
장 성 군		자 체	침 대	"	"
담 양 군		보 호 자	온돌(1)	"	"
금 성 시		"	온돌(3)	"	업 소
영 암 군		자 체	침 대	"	센 터
무 안 군		-	-	-	-
장 흥 군		-	온돌(5)	-	-
구 례 군		보 호 자	온돌(1)	고 용 원	센 터

		적출물처리	병 실	세 탁	식 사	
경 북	청 송 군	자 체	침 대	보건요원	센 터	
	영 양 군	"	"	"	산모집	
	영 풍 군	"	온돌(1)	고 용 원	업 소	
	봉 화 군	"	침 대	보건요원	"	
	성 주 군	보 호 자	"	"	산모집	
	월 성 군	"	온돌(2)	고 용 원	업 소	
	고 령 군	-	침 대	-	-	
	칠 곡 군	-	"	-	-	
	선 산 군	보 호 자	온돌(4)	보건요원	산모집	
	상 주 군	-	침 대	-	-	
	울 진 군	지정처리인	온돌(2)	고 용 원	센 터	
	경 남	통 영 군	지정처리인	온돌(1)	고 용 원	센 터
		양 산 군	"	온돌(2)	"	산모집
거 제 군		자 체	온돌(1)	보건요원	센 터	
의 창 군		지정처리인	침 대	"	업 소	
사 천 군		보 호 자	온돌(1)	"	"	
함 안 군		"	온돌(4)	"	센 터	
산 청 군		-	침 대	-	-	
제 주	북제주군	보 호 자	침 대	고 용 원	센 터	
	남제주군	-	온돌(1)	"	산모집	

모자보건센터 운영 실태조사

모자보건센터명 : _____

주 소 : _____

응 답 자 : 직위 _____ 성명 _____

보건사회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인 사 말

모자보건센터 사업을 위해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센터사업은 정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십이분으로 활용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에 당연구원에서는 모자보건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정책에 건의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1985년 6월 30일을 작성기준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당연구원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원 센터의 경우도 해당항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5. 7.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

박 찬 무

모자보건센터 조사표 (관리운영측면)

1. 개원 (예정) 일자 198

2. 입주 및 건물구조 상태 (예 센터, 보건소)
 (해당란에 V 표하고 해당사항을 기록하십시오)

- (1) 센터와 보건소가 나란히 인접 ()
- (2) 센터 옥상에 보건소 증축 ()
- (3) 보건소 전부가 센터에 입주 ()
- (4) 보건소가 센터에 일부 입주 ()

센터와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입주부서명 _____

- (5) 센터와 보건소가 떨어져 있다.
- 센터와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3. 운영방법

- (1) 일과시간 (09:00 ~ 18:00) 만 운영 (공휴일 휴진)
- (2) 24 시간 운영 (공휴일 휴진)
- (3) 24 시간 운영 (공휴일도 근무)

4. 야간근무방법

- (1) 의사와 조산원이 각각 근무조장이 되어 근무
- (2) 조산원이 근무 (교대) 하고 긴급시 의사에게 연락
- (3) 보건소 또는 센터 직원이 숙직하고 긴급시 의사 또는 조산원에게 연락

5. 정원대 현원

(1985.6.30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의	사**				
조	산	원			
간	호	원			
간	호	보	조	원	
행	정	요	원		
조	리	사			
청	소	부			
기		타			
	계				

※ 임용을 위한 수속증인자는 현원으로 포함시키고 * 표시를 하십시오.

** 의사의 경우 전문의 일반의

6. 조산원, 간호원 직급

구	분	정원상직급(A)	현직급및호봉(B)	정원인가 해당관에 번호기입 (C)	연 령 만 (세)	보건의료기관 총 근무경력*
조산원	1					년 개월
"	2					
"	3					
간호원	1					
"	2					
"	3					
"	4					
간호보조원	1					
"	2					
"	3					
"	4					

기입요령 : (A) 센터의 정원상직급

(B) 실제 근무중인 요원이 받고 있는 직급과 호봉

(C) (1) 중앙 또는 도에서 별도로 정원을 인가 받은 경우

(2) 군 자체정원에서 조정된 경우

* 센터 경력도 포함. - 88 -

7. 조산원, 간호원 미확보시 (정원상 부족) 센터에서 강구한 대책
 대책 (1) _____
 (2) _____
 (3) _____

8. 귀 센터에서 임부에게 다음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검 사 내 용	안하고 있다	하고 있다		수 수 료	
		전 원	특수한 경우	받고 있다	안받고 있다
당 · 단 백 뇨					
혈 색 소					
혈 액 형					
매 독					

9. 귀센터에서 산전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 (1) 안 받고 있다
 (2) 받고 있다 1회당 얼마 _____ 원

10. 군보건소 소재 읍·면내 의료시설 및 인력현황

		의 사	조 산 원	간 호 원
병 원	개소			
의 원	"			
조 산 소	"			

11. 후송병·의원 지정현황

	1	2
기 관 명		
소 재 지 명		
거 리	km	km
소 요 시 간	분 (Ambulance)	분 (Ambulance)

12. 현재 센터에서 병실의 일부를 온돌방으로 개조한 것이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있으면 _____ 개

13. 산모 식사와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 사	세 탁 물
<input type="checkbox"/> (1) 센터에서 제공 (구내식당 포함)	<input type="checkbox"/> (1) 센터 고용원
<input type="checkbox"/> (2) 업소와 계약	<input type="checkbox"/> (2) 업소와 계약
<input type="checkbox"/> (3) 산모 집에서 운반	<input type="checkbox"/> (3) 센터의 보건의원
<input type="checkbox"/> (4) 기 타 _____	<input type="checkbox"/> (4) 기 타 _____

14. 세출예산 : 모자보건센터의 1985 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1) 보건소 예산과 공동으로 편성
- (2) 센터 단독예산 편성

(센터 단독예산인 경우에만 기록하십시오)

구 분	85 년 도
의 약 품 비	
난 방 비	
공 공 요 금	
사 무 용 품 비	
차 량 운 반 비	
피 복 비	
수 수 료 및 수 선 비	
기 타	
계	

15. 수입금 : 1985. 1. 1 ~ 6. 30 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된 금액을 기입하시요.

구 분	1985. 1. 1 ~ 6. 30
산 전 관 리	
분 만 개 조	
산 후 관 리	
영 유 아 관 리	
산 부 인 과 질 환	
가 족 계 획 시 술	
기 타	

16. 분만비 및 분만시 입원시간

구 분	평 균 총 경 비	평 균 입 원 시 간
초 산	원	시 간
경 산	원	시 간

17. 사업실적

1985. 1. 1 ~ 6. 30

구 분	월 별	1985. 1. 1 ~ 6. 30						계
		1	2	3	4	5	6	
임 부 등 록								
산 전 관 리								
분 만 개 조								
산 후 관 리								
영 유 아 등 록								
영 유 아 관 리								
의 퇴 환 자 수								
가족계획시술 (IUD)								
가족계획시술 (난관)								

18. 분만시간별 분만수 (1985. 1.1 ~ 6.30 까지)

구 분	분 만 수
09:00 ~ 18:00	
18:00 ~ 09:00	

19. 적출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1) 자체내 적출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① 소각 ② 매몰
 (2) 지정처리인에게 인계하고 있다.
 (3)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20. 기록 및 보고서식

1983 가족보건 업무규정에 명시된 기록 및 보고서식 사용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서 식	서 식 명	사용하고 있다	사용안한다	미사용사유
2	산전관리 기록부			
3	영유아 기록부			
4	분만관리 기록부			
5	적출물 처리대장			
6	임산부 입·퇴원 대장			
7	입·퇴원 결정서			
8	분만대장			
9	신생아 신분확인표			
10	후송의뢰서			
11	사업실적보고			
12	건강위험치 평점표			

그외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1. _____ 4. _____
 2. _____ 5. _____
 3. _____ 6. _____

21. 현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중 교체하고 싶은 장비명, 미사용 장비, 또는 추가하고 싶은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명을 기록해 주십시오.

교체 장비명	미사용 장비명	추가장비명

22. 홍보방법

23.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